감전위험 큰 LED등기구 등

리콜 조치



기술표준원은 2013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LED 등기구, 휴대용 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LED등기구(6개)와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등 12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리콜 명령(리콜조치율 3%)을 내렸다. 리콜 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안정기, 퓨 즈 등 부품이 누락 ·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LED 취침용 등기구 1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외관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으로 변경하여 제품의 일부 부품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에서는 충전부 노출 및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

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 러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휴대용 예 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 끝이 떨어지 거나 균열되어 사용자가 제품사용 시 파편으로 인한 신 체의 손상이 우려되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와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최근 LED 시장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부적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에 LED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재실시하여 안전한 LED 제품 유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계획이다.

LED등기구(6개 제품)

업체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처분내용
일신산업	한국	SH110414 -11001	IS- LED8	 충전부 노출 접지 불량 구조 임의 변경 	수거, 교환
B.S.E ((주)글로벌 휴먼라이텍)	한국	HD11166 -12002B	BS S15W	접지설비 부적합 절연내력 부적합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부적합 구조 임의 변경	수거, 교환
고려산업 ((주)한주물산)	한국	HD11097 -11006A	KR- LED3 1	접지설비 부적합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부적합 부품누락	수거, 교환
고려산업	한국	HD1109 7–12007A	KR-LED 매입등	접지설비 부적합 절연내력 부적합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부적합 구조 임의 변경	수거, 교환
H.E Lighting (씨티전기(주))	중국	HU11042 -12038	LEDFLOOD 3530-HE	절연내력 부적합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부적합 구조 임의 변경	수거, 교환
Yingle lighting Appliances Co., Ltd. ((주)룸인커머스)	중국	JU11248 13001	NI 07	• 디자인 변경 • 부품누락 및 구조변경 • 제품에 라벨이 없음	수거, 교환

전격살충기(1개 제품)

업체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처분내용
Grace&Bless Electronics Co.,Ltd ((주)다와)	중국	HU07312 -4002C	LK- 8244\$	• 충전부 감전호보 • 부품 누락	수거, 교환

선풍기(1개 제품)

업체명	체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처본내용
금강전자산업(주)	한국	JH07034 -11001B	HJ- N240	• 이상시험 • 부품 제거	수거, 교환

형광등기구(1개 제품)

업체명	제조국	인증변호	모델명	조사결과	처분내용	
Wooree L/E.	베트남	JU11176 11001	WLW- PL236D	• 접지설비 부적합 • 절연내력 부적합 • 부품변경	수거, 교환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제품)

업체명	제조국	인중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처분내용
(주)공성 (칠성기연)	한국	A042C001 -3003	K-blade CS-2	• 내충격성 이상	수거·환급·파기
motoyuki co.,ltd (한진물산)	일본	A043R004 -3001	OZ-255 -40K	• 내충격성 이상 • 날약 재질 기준치 미달	수거 · 환급 · 파기
주식회사 오에스씨	한국 !	A043H002 -7002	OSC- 930S	• 내충격성 이상	수거 · 환급 · 파기

국내외 리콜현황

*조사기간 : 8월 30일~-9월 26일

한국	총 12건(강제 12건) : 공산품 3건, 전기용품 9건	유럽연합	총 159건(강제 130건, 자발 29건) : 공산품 128건, 전기용품 31건
미국	총 16건(자발 16건) : 공산품 10건, 전기용품 6건	호주	총 18건 : 공산품 15건, 전기용품 3건
일본	총 19건(자발 19건) : 공산품 7건, 전기용품 12건	뉴질랜드	총 6건(자발 6건) : 공산품 4건, 전기용품 2건
캐나다	총 11건(강제 1건, 자발 10건) : 공산품 7건, 전기용품 4건	영국	총 3건(지발 3건) : 공산품 2건, 전기용품 1건

소비자 사고통계 현황 발표

일본 소비자청은 2013년 4월~6월에 보고된 생명 및 신체 상해에 관한 소비자 사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집된 전체 사고 건수는 총 620 건으로, 이중 제품에서 기인한 화재 및 부상이 39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306건으로 그중 제품 관련 화재 및 부상은 2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1월~3월 사고 보고사안 및 이전 공표 때 조사 중이었던 사안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적 ·확인하 여 발표하였는데, 총 930건의 사고 중 조사완료 366 건. 조사 중 552건. 이외 비공표 12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고통계 결과는 소비자안전법에 따라 제품 사고 피해확대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한 정기적인 공표 자료이다.

※ 자료 : CAA (www.caa.go.jp)

2013 북미 소비자제품안전회담 개최

2013 북미 소비자제품안전회담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1년 베데스다,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도 소비자제품 분야의 캐나다, 미 국 및 멕시코 사이의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액브로즈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 북미 무역 및 접근성의 수준을 높이고 더욱 밀접한 관계 개선을 위해 제품 안전성 문제와 주요 과제에 더욱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그간 캐나다 정부도 2011년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도입 등을 통해 위해제품 대처를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음을 피력했다.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을 갱신한 것으로, 점포로부터 위험 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성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자료 : Health Canada(www.hc-sc.gc.ca)

호주 퀸즐랜드, 크리스마스 완구 안전성 조사

호주 공정거래소(OFT, the Office of Fair Trading)는 크리스마스 3개월 전부터 어린이용 완구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에서부터 자석완구, 투사체 완구, 물놀이 완구, 배터리 작동 완구, 기타 금지완구 등이다.

특히 소매업체 대리점을 방문하여 완구에서 3세 이하유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의 포함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버튼배터리·자석'관련 사고로 유아 2명이 사망한 이후, 3세 이하 완구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함이다.

한편 OFT는 소매업체에 판매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연령에 대한 라벨표시의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 공정거래소는 작년 약 400개 이상 소매업체에서

'부모 대상 완구 안전성 5대 체크리스트'

- (크기) 유아가 어릴수록 큰 것이 좋음(탁구공보다 작은 크기의 완구는 3세 이하 유아에게는 너무 작음)
- (모양) 쉽게 삼킬 수 있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제품 조심할 것
- (표면) 모든 마감재가 비독성인지 확인할 것
- ·(끈) 30cm 이상 끈은 유아 질식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제거
- (감시) 항상 아이를 주시할 것

2,000가지 이상 제품군을 검사하여,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자료: ACCC(www.productsafety.gov.au)

블라인드 줄 및 커튼 줄에 대한 위험성 경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공정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유아 목 졸림 사망 사건(기술표준 9월호 참고)으로 불라인드 줄 및 커튼 줄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 고 있다. 공정거래소는 유아용 침대와 일반 침대 등 모 든 가구에서 커튼 및 블라인드 줄을 멀리 떨어뜨려 놓 을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줄을 둘 것 ▲신제품인 블라인드 및 커튼 줄은 경고 라벨 또는 꼬리표를 부착 해야 하며, 포장에도 반드시 경고를 표시 ▲일부 제품 에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설치하고 제조업 체 설명서에 따라 사용할 것, 공급자에게 안전 주의사 항 지시를 받을 것.

특히, 커튼 줄이나 블라인드 줄 관련 동일 사고 예방 을 위해 주요 사고 사례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짐 ▲줄을 갖고 놀 때 올가미가 생길 우려 ▲아기들은 침대판을 통해 블라인드 줄이나 커튼 줄을 잡고 줄을 목에 끌어 당길 수 있음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아이 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에 목이 졸릴 수 있음

한편 2003년 이전에 설치된 블라인드 줄 및 커튼 줄의 경우 줄이 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공정거래소는 블라인드 줄 관련 안전기준 규정을 다른 기관에 앞서 2002년 9월 처음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블라인드 줄, 커튼 줄, 창문 줄과 관련된 강제 안전기준을 타 기관 담당 규제자와 협력하여 2010년 7월 공포하였다. ■SS

* 자료 : ACCC

※ 해당 내용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에서 발표한 주간 제품안전 동향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http://www.safetykorea.kr)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